## 대구광역시 서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 456

제출연월일 : 2023. 8. 25.

제 출 자 : 서구청장

#### 1. 개정이유

O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13조 3항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생활체육단체(지방체육회)의 운영 지원을 조례로 명시 필요

#### 2. 주요내용

가. 지방체육단체 지원에 관한 사안(안 제1조)

- 1) 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해야 함을 조례에 명시(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제3항 반영)
- 3. 개정조례안: 붙임
- 4. 신·구조문대비표: 붙임

## 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18조

나. 예산조치: 별도 조치 필요 없음

#### 다. 기타사항

- 1) 입법예고
  - 가) 예고기간: '23. 7. 20. ~ 8. 9.
  - 나) 예고결과: 의견 없음
- 2) 규제심사: 규제심사 대상 아님
- 3) 부패영향평가: 원안동의
- 4) 성별영향평가: 원안동의
- 5) 비용추계서: 해당사항 없음
- 6) 조례·규칙 심의 결과: 원안의결

## 대구광역시 서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대구광역시 서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조 중"「생활체육진흥법」 제3조"를"「생활체육진흥법」"으로 한다.

제2조제2호 중 "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33조의2"를 "법 제33조의2"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 중 "자들"을 "사람들"로 한다.

제4조 중 "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4조제2항"을 "법 제4조제2항"으로, "체육 진흥 계획"을 "대구광역시 서구 체육 진흥 계획"으로 한다.

제5조제1항 중 "구민의 체육동호인 활동"을 "체육동호인조직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"생활체육 동호인 활동"을 "체육동호인조직"으로, "지원"을 "활동 지원"으로 하며, 같은 항 제5호 중 "생활체육회"를 "생활체육단체"로, "체육 진흥"을 "생활체육 진흥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③ 구청장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.
- 1. 상근직원의 인력 운영비
- 2. 사무실 운영 경비
- 3.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 경비

제6조제1항 중 "예산집행"을 "예산 집행"으로 한다. 제7조 중 "포상방법"을 "포상 방법"으로 한다. 제9조를 삭제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게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국민체	제1조(목적)
육진흥법」 및 「생활체육진흥	생활체육진흥
법」 제3조에 따라 대구광역시	법 <u></u>
서구 구민의 체육활동을 장려하	
고 지원함으로써 생활체육진흥	
을 도모하여 여가선용을 통한	
구민 건강 증진에 기여함을 목	
적으로 한다.	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	제2조(정의)
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다	
만, 이 조례에 정의되지 않은 용	
어는 「국민체육진흥법」(이하	
"법"이라 한다)에 따른다.	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"생활체육단체"란 <u>「국민체</u>	2 <u>법 제33조</u>
<u>육진흥법」 제33조의2</u> 에 따라	<u>의2</u>
설립된 대구광역시 서구체육	
회(이하 "체육회"라 한다) 및	
체육회의 회원종목단체를 말	
한다.	<b>.</b>
3. "체육동호인조직"이란 대구	3
광역시 서구(이하 "서구"라 한	
다)에서 같은 생활 체육 활동	
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<u>자들</u>	사람

의 모임을 말한다.

제4조(진흥계획의 수립) 대구광역시 서구청장(이하 "구청장"이라한다)은 <u>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4조제2항</u>에 따라 구민의 건강과체력 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 증진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체육 진흥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- 제5조(경비의 지원) ① 구청장은 구민의 체육동호인 활동과 생활 체육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 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.
  -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 - 1. · 2. (생략)
  - 3. <u>생활체육 동호인 활동</u>의 육 성 및 지원
  - 4. (생략)
  - 5. <u>생활체육회</u> 운영 및 <u>체육 진</u> 흥 사업에 필요한 경비
  - ③ 구청장은 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하여야한다.

<u>들</u>
제4조(진흥계획의 수립)
법 제4조제2항
대구광역시 서구 체육 진흥 계
<u>খ</u>
제5조(경비의 지원) ①
체육동호인조직
②
1. • 2. (현행과 같음)
3. <u>체육동호인조직</u>
활동 지원
4. (현행과 같음)
5. <u>생활체육단체</u> <u>생활체육</u>
진흥
③ 구청장은 법 제18조제3항에
따라 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
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하
<u>여야 한다.</u>
1. 상근직원의 인력 운영비

3.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이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 경비 제6조(지도·감독 등) ① 구청장 제6조(지도·감독 등) ① -----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 하여 제5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 을 지급받는 생활체육단체 및 ----- <u>예산 집</u>행 --체육동호인조직의 예산집행 및 운영 등에 대하여 지도 · 감독하 여야 한다. ② (생략) ② (현행과 같음) 제7조(포상) 구청장은 서구의 생 제7조(포상) -----활체육 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 저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하여 포 상할 수 있으며, 포상방법 등 포 ---- <u>포상 방법</u> ----상에 필요한 사항은 「대구광역 시 서구 포상 조례」를 따른다. 제9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<삭 제>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

수 있다.

2. 사무실 운영 경비

#### 【관계법령】

#### 국민체육진흥법

[시행 2022. 8. 11.] [법률 제18808호, 2022. 2. 3., 일부개정]

제18조(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한 보조) ① 국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<u>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하여 체육 진흥에 필요</u>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한다.

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한체육회, 지방체육회, 대한장애인체육회, 지방장애인체육회, 한국도핑방지위원회,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 공단, 스포츠윤리센터, 그 밖의 체육단체와 체육 과학 연구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나 연구비의 일부를 보조한다. 〈개정 2020. 2. 4., 2020. 12. 8.〉
-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 〈개정 2020. 12. 8., 2022. 2. 3.〉